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
------	----

제출년월일 : 2003.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1998년 8월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운영 이후 물가상승등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조례제정 이후 줄곧 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 반면 염습,전기,유류,가스,수도료등은 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므로 사용료를 인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용료 인상(안 제9조)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사용료징수등) 제1항
[별표1]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보건65552-1652(2003. 7. 25 ~ 8. 16)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시 설 명	식 당	분양소	안치실	영사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사 용 료	70,000원	30,000원	30,000원	100,000원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즉시 1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시설명	식 당	분향소	안치실	염사료	시설명	식 당	분향소	안치실	염사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1인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사용료	60,000	20,000	20,000	57,000	사용료	70,000	30,000	30,000	100,000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4시간이상 사용시간을 1일로 본다.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즉시 1일로 본다.				